

소통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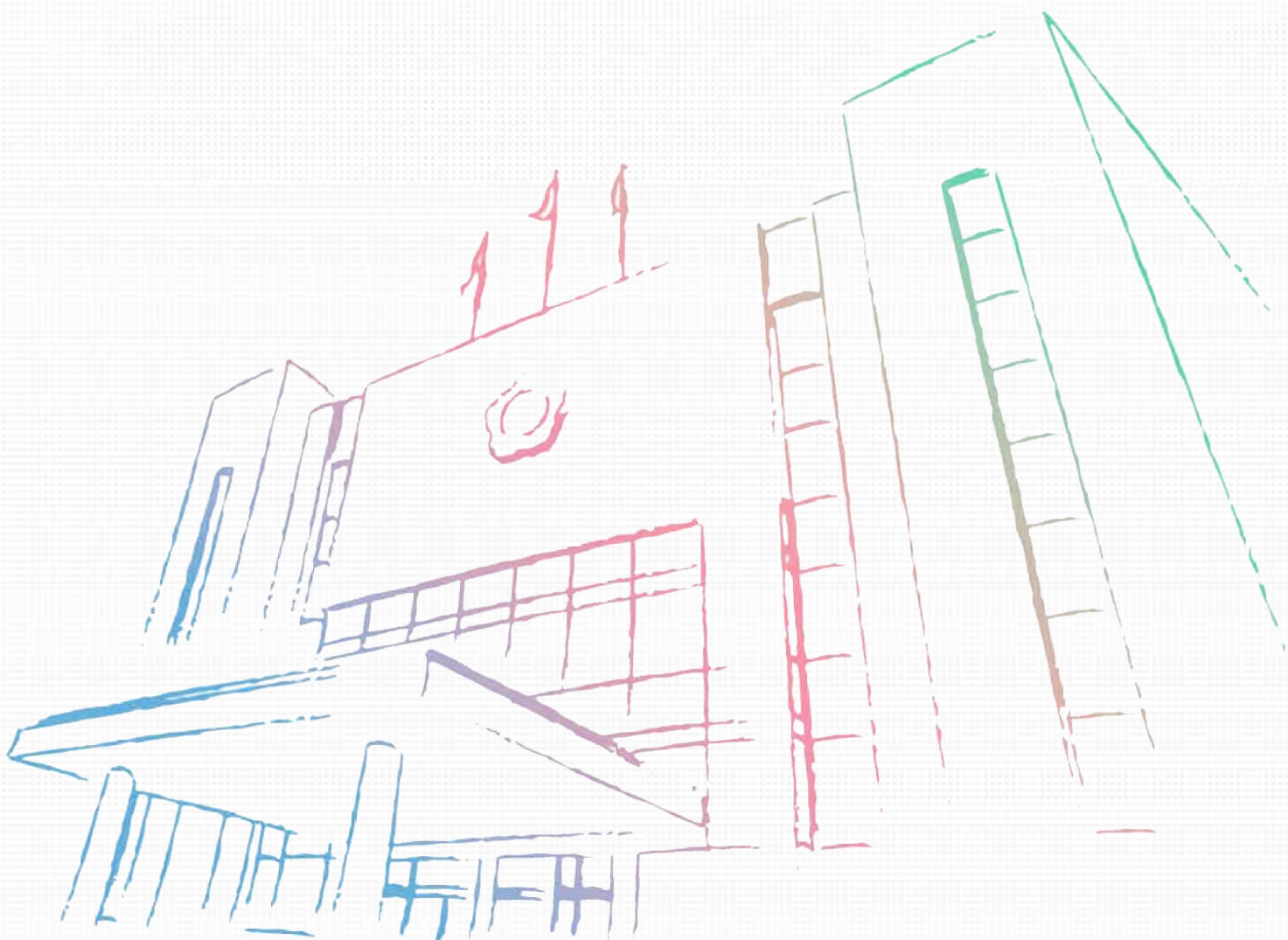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보

2025년 6월





목차

I 법령 제정·개정 동향

1.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	2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3
3.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4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5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6
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	7
7. 건축법 시행규칙(개정)	8
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9

II 다른 시·도 조례 입법동향

1.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11
2. 전라남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2
3. 고흥군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3

III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1.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시·도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 시·도 조례에서 포획·채취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고 해당 사항을 시장·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가능 여부(「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경상북도)	15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가 「환경영향평가법」 제 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해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명회를 개최할 때,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이 참석하는 경우에만 적법한 설명회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 조례 규정 가능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등 관련(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21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 조례 규정 가능 여부(「지방공기업법」 제46조제2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구로구)	24

IV 국외 입법례

1. 독일의 도심항공교통(UAM) 관련 입법례	32
---------------------------------	----

1. 법령 제정·개정 동향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 2025. 6. 4.] [법률 제20548호, 2024. 12.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 한부모에게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을 조사하고 학업 지원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가정방문의 형태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와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법률상담 및 유전자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강화하는 한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5. 6. 4.] [법률 제20955호, 2025. 5.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인 공공방식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명확히 하고, 재난 등으로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하는 것이 어렵다고 시장·군수 등이 인정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며,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등으로 선임 또는 선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운영교육 및 윤리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합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3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80호, 2024. 12.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게 체험휴양 공동 프로그램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을 운영하는 유치원, 학교 및 농어촌유학 중인 학생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법에 따른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 인증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음을 고려하여 이를 폐지하고, 인증 제도의 폐지에 따른 도농교류 교육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종전의 인증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함.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6. 26.] [법률 제20838호, 2025. 3. 2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 규정을 다시 신설하고, 상영등급 분류를 받은 영화를 동일한 내용으로 수입하거나 다시 상영하는 영화를 상영등급 분류 면제대상으로 명시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화업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와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 변경신고 및 지위 승계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비디오물소극장업소의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 형량을 하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6. 2.] [대통령령 제35574호, 2025. 6. 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게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등에서 종사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치료제 및 백신의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71호, 2024. 1. 30. 공포, 2025. 7. 31. 시행 및 법률 제20583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인에 대한 방역업무 종사명령을 하는 경우 방역업무 종사명령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한편, 질병관리청장이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장을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도록 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업무 등을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업무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 6. 2.] [대통령령 제35582호, 2025. 6. 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 양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경우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의 예외로 인정하여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종전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건설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영업정지 등의 처분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되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로서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처분 권한은 위임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로서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 사고에 대한 처분 권한만 위임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허가 등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 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 1명과 건축구조기술사,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중 1명을 필수로 두도록 하던 것을 인구 50만명 미만 시·군·구의 지역건축안전센터로서 지역 여건상 해당 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중 1명만 필수로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6. 10.] [국토교통부령 제1501호, 2025. 6. 1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주택으로서 공급받을 예비입주자가 없는 이른바 무순위 청약 대상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약 요건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한정하고, 투기 및 과열경쟁이 우려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해당 주택건설지역 등에 거주할 것을 청약 요건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점제를 적용하여 당첨된 사람 및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람에 대하여 부양가족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부양가족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제출하게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II. 다른 사·도 조례 입법동향

1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6.19.]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1315호, 2025.06.19., 제정]

□ 제정이유

- 청년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함께 지역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안 제3조~제4조)
- 다.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청년친화도시위원회,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마. 비용 등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0조)

□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청년친화도시)

□ 시·도별 현황

-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전라남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25.06.26.] [전라남도 조례 제6300호, 2025.06.26., 제정]

□ 제정이유

- 가상융합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가상융합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등의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도지사가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방향, 기반 구축, 자원 확보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함(안 제5조).
- 다.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지역 현황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라. 가상융합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및 사업화, 연구시설 및 인프라의 조성·활용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 관계법령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 시·도별 현황

- 경기, 충남, 충북

3

고흥군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6.02.] [전라남도 고흥군 조례 제3168호, 2025.06.02., 제정]

□ 제정이유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고흥군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육성 및 지원사업(안 제4조, 안 제5조)
- 라.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율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관계법령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시·도별 현황

- 인천, 대전, 세종, 대구, 부산, 울산, 경기, 경남, 전북, 전남

III. 지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1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시·도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 시·도 조례에서 포획·채취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고 해당 사항을 시장·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의견25-0183] 경상북도

□ 질의요지

가.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시·도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 시·도 조례에서 포획·채취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고 해당 사항을 시장·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나. 비어업인으로 하여금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 공기통·호흡기·부력조절기 또는 추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다. 비어업인으로 하여금 마을어장 및 양식장을 제외한 수역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 견

가. 질의 가, 질의 나 및 질의 다의 공통사항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이하 “비어업인”이라 한다)는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수량·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채취 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려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어구·방법에 관한 기준과 장비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도의 조례로 포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수산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에서는 시·도의 조례로 시·도의 포획·채취 기준을 정할 때에는 해당 시·도의 수면에서 서식하는 수산자원의 특성, 자원량, 수산자원 보호 필요성(제1호)을 고려할 것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경상북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안’(이하 “경상북도 조례안”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어구·방법·장비 기준에 관하여 시장·군수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려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임법령의 취지에 따라 해당 내용을 조례로 정해야 합니다.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다른 형식의 법규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재위임하게 되면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실질적으로 다른 형식의 법규로 정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각주: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 79쪽 참조). 그런데, 경상북도조례안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2항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직접 정하지 않고 시장·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이 때 ‘그 사무’란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말하며, 자치사무라 하더라도 조례를 제정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미치는 소관 자치사무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45 판결 참조).

이 사안의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2항에서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시·도에 권한을 주고 있어 해당 기준을 정하는 사무는 시·도의 사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상북도 조례안에서 시장·군수로 하여금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도의 소관 사무를 시장·군수가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것으로 법령에서 시·도의 사무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서 시·군의 사무로 규정하는 결과가 되어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13. 2. 8. 의견제시 13-0030 참조).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내에 대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제2호에서는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장비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수중레저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수중레저장비 중 ‘수경, 숨대롱, 잠수복, 잠수모, 오리발, 수중칼 및 호루라기’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중레저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수중레저장비에는 수경, 숨대롱, 잠수복, 잠수모, 오리발, 수중칼 및 호루라기 외에 공기통, 호흡기, 부력조절기, 추 및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수중레저장비와 비슷한 형태 또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때 ‘공기통, 호흡기, 부력조절기, 추(이하 “공기통등”이라 한다) 또는 그 밖에 수중레저법시행령 제4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수중레저장비와 비슷한 형태 또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은 법령에 의해 금지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경상북도조례안 제4조제2항에서는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때 공기통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 하는데, 해당 규정의 취지는 비어업인이 공기통 등을 사용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관하여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시 기재하는 것에 해당하여 규정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경제상으로도 바람직해 보이지 않으므로(각주: 법제처 2022. 4. 12. 의견제시 22-0103 참조), 자치법규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질의 그에 대하여

경상북도조례안 제3조제1항에서는 비어업인은 마을어장 및 양식장을 제외한 수역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려 합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비어업인은 ‘마을어장 및 양식장’의 수역에서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이는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장소를 제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어업인에 대한 수산자원 포획·채취 장소의 제한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2항에서 시·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기준’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려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어구·방법·장비”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수산자원 포획·채취의 장소적 범위가 여기에 포함되는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각주: 법제처 2024. 9. 2. 의견제시 24-0294 참조).

그렇다면, 질의요지와 같이 비어업인으로 하여금 ‘마을어장 및 양식장’의 수역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은 일정한 장소에서의 수산자원 포획·채취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으로서, 이러한 포획·채취 장소에 관한 기준을 시·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자치법규 입안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해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명회를 개최할 때,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이 참석하는 경우에만 적법한 설명회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 조례 규정 가능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등 관련)**

[의견25-0095]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질의요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해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명회를 개최할 때,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이 참석하는 경우에만 적법한 설명회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 견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개정할 때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각주: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추5050 판결,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판결 참조).

먼저,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제1항),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해서는 제13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제2항) 있습니다. 그리고 제13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고·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전문가 의견 청취 등에 관한 절차방법을 규정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9조에서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 내에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설명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제4항), 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해당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시·군·구 및 읍·면 또는 동의 게시판에 공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제5항) 있습니다.

그 밖에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 방법 및 공람기간(제36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제38조), 공청회의 개최 요건 및 공고 내용(제40조), 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 방법(제41조의2),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제42조) 등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영향평가법령의 규정들을 살펴보면,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따라야 하는 절차·방법에는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가 갖추어야 하는 개최 기준·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각주: 대법원 2001. 6. 29. 선고99두 9902 판결 참조), 그러한 사항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참석을 설명회 개최 요건으로 두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방법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일정한 수의 주민이 참석한 설명회만 적법한 설명회인 것으로 본다면 참석 주민 수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설명회를 다시 개최해야 하는 등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게 될 것인데, 이는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위 내용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 조례 규정 가능 여부(「지방공기업법」 제46조제2항 등 관련)

[의견25-0169] 서울특별시 구로구

□ 질의요지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 견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한편,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각주: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추5050 판결, 법제처 2008. 5. 1. 회신 08-0040 해석례 참조).

나. 질의 가에 대하여

먼저,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 대해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 정보 공시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공기업법」 제46조제2항(제75조의2 및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서는 지방공기업에 대해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 결과,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서는

법 제46조제2항에서 지역주민에게 공시해야 하는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연도별 예산 및 운영계획(제1호), 「감사원법」 제33조부터 제34조의2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개선요구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제2호),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제3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지방공기업에 대해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공기업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경영공시와는 별개의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항의 공시는 경영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는 것으로서 경영상 중요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상의 경영공시 제도와 그 취지가 중복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공기업의 경영공시 사항을 열거적으로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의 규율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인 사항을 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질의요지와 같이 지방공기업에 대해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경영공시 사항을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공기업법」 제46조제5항(제75조의2 및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이 경영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였을 때 등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거짓 사실 등을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경영공시의 기간·방법 및 공시 서류의 복사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감독 조치 및 경영공시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다라도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지방공기업의 경영 정보를 공시하는 것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기보다는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정 체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기업 임원의 성별, 지방공사·지방공단 임원의 연봉 현황 및 성별 근로자 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공기업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통합공시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각주: 행정안전부, 『2024년 지방공기업 통합경영공시 기준』 별표 1 참조),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시하고 있는 정보와 동일한 내용을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재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새로운 정보 공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에게 이미 공개되어 있는 통합공시 사항을 개별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다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치법규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먼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하며, 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에 대해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정보 공시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은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제1호), 전년도 결산서(제2호),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제3호),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제4호) 및 자본금, 채무 변동 등 재무 현황 및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8호) 등을 경영공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는 전년도의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제1호), 전년도의 출자기관의 자본금 또는 출연기관의 기본재산 현황(제2호) 등 경영공시 사항을 특정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출자출연법 제32조제2항에서는 경영공시의 시기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경영공시의 세부항목,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출자출연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경영공시와는 별개의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항의 공시는 경영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는 것으로서 경영상 중요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출자출연법상의 경영공시 제도와 그 취지가 중복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출자출연법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공시 사항·방법 등의 기본적인 내용을 법령에 규정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질의요지와 같이 해당 내용을 벗어나는 경영 정보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법령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통보 내용에 따라 경영공시 제도를 규율하려는 지방출자출연법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출자출연법 제33조제3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출연기관이 경영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나 경영공시를 할 때 거짓 사실을 공시한 경우(제3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감독 조치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지방출자출연법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정보를 공시하는 것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기보다는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정 체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 사안의 경우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성별·연봉, 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 및 성별 근로자 임금비율에 관한 사항이 지방출자출연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통합공시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각주: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2024. 12. 18. 개정되어 2025. 1. 1. 시행된 것을 말함) 별표 2 참조),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시하고 있는 정보와 동일한 내용을 출자·출연기관으로 하여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재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에 관한 새로운 정보 공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에게 이미 공개되어 있는 통합공시 사항을 개별 출자·출연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치법규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V. 국외 입법례

독일의 도심항공교통(UAM) 관련 입법례

국회법률도서관 최신 외국입법정보 [2025-11호] (2025. 6. 27.)¹⁾

- 최근 도시밀집화로 인한 교통혼잡을 개선할 수 있는 미래세대의 대체 교통수단으로서 도심 항공교통(UAM)이 주목받고 있다. 도심항공교통은 무인항공기 기술을 사용하여 화물과 사람을 이동시키는 수단이다.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에 앞서 기술개발과 이에 따른 실증, 그리고 법제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 우리나라는 2023년에 미래의 교통수단으로서 도심항공교통 기술의 발전과 실용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항공교통법」)을 제정하여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도심항공교통과 관련된 실증과 시범 운용을 추진하고 있다.
- 독일은 대도시권의 교통난 해소와 빠른 운송을 목적으로 2020년부터 연방정부 주도로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를 위한 실증과 시범시설을 운영하고, 패키지 개정 법령인 2017년 「무인항공기 운항을 규제하는 개정시행령(DrohnenV)」과 2021년 「운항규칙 절차에 관한 개정법(LuftRÄndG)」을 통해 기존의 도심항공교통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독일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도심항공교통에 대한 입법과 정책을 집행 및 개선해 나감에 있어 참고하고자 한다.

■ 관련법령: 「도심항공교통법」,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 주 제 어: 도심항공교통(UAM), 무인항공기, 도심형항공기, 버티포트(vertiport), 첨단항공교통

1) 출처 국회법률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https://law.nanet.go.kr/foreignlaw/newForeignLawissue/list.do?isMenu=Y>

- 2024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르면,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도심형항공기, 버티포트(Vertiport)¹⁾ 및 도심항공교통회랑²⁾ 등의 이용·관리·운영체계를 말한다.³⁾ 국토교통부의 K-UAM 로드맵(2020년)에 따르면 2024년까지 시험·실증사업을 추진하고 2025년부터는 일부 노선 상용화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 지연으로 2025년 6월 현재에도 실증사업(K-UAM 그랜드챌린지)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⁴⁾ 도심항공교통을 위한 비행체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으며, 버티포트, 통신망 등 안전 기준과 교통관리 체계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⁵⁾
-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세계 도심항공교통 시장이 연평균 30.7%에 달하는 성장률을 보이며 2040년에는 시장 규모가 1조 4,740억 달러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⁶⁾ 2021년 독일무인항공협회는 앞으로 도심항공교통이 상용화됨에 따라 2025년까지 상업용 드론 시장이 연평균 16.06%의 성장률로 성장해 2025년에는 시장 규모가 15억 5,400만 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⁷⁾
- 독일은 도심항공교통이 친환경성, 교통대란 해결, 응급 환자 이송 등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2020년 5월에는 연방교통부가 “도심항공교통 실현을 위한 연방정부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Unbemannte Luftfahrtsysteme und innovative Luftfahrtkonzept - Aktionsplan der Bundesregierung)”⁸⁾과 “3차원에서의 이륙 - 드론 및 항공택시에 대한 연방정부의 행동계획(Abflug in die dritte Dimension - Aktionsplan der Bundesregierung für Drohnen und Flugtaxi)”⁹⁾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2017년의 「무인항공기 운항을 규제하는 개정시행령(DrohnenV)」과 2021년의 「운항규칙 절차에 관한 개정법(LuftRÄndG)」를 통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다.

1) 「버티포트」란 도심형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항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시설과 사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시설을 말한다(「도심항공교통법」 제2조제3호).

2) 「도심항공교통회랑」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형항공기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의 상공에 표시한 공간의 길을 말한다(「도심항공교통법」 제2조제4호).

3) 「도심항공교통법」 제2조제1호.

4) 최경원, 데이터로 보는 도심항공교통(UAM), 국회도서관, 『Data&Law』 2025-5호(통권 30호), 2~3면.

5) 한국일보, “UAM 기체 못 구해 국내 개발 울스름…”, 2025.6.2.

6) 대한상공회의소, “UAM, 13조 시장이 온다”, 2022.5.18.

7) KOTRA, “현실로 다가오는 유럽과 독일의 도심항공교통(UAM)시대”, 2021.9.13.

8) 독일 연방교통부 https://www.bmv.de/SharedDocs/DE/Anlage/DG/aktionsplan-drohnen.pdf?__blob=publicationFile

9) 독일 연방교통부 <https://www.bmv.de/SharedDocs/DE/Artikel/DG/aktionsplan-fuer-drohnen-und-flugtaxi.html>



독일의 도심항공교통 관련 계획

1. 도심항공교통 실현을 위한 연방정부의 구체적인 실행계획

- 독일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도심항공교통 관련 정책을 마련하였다. 2020년 5월 13일 연방교통-디지털인프라부(현 연방교통부)의 “도심항공교통 실현을 위한 연방정부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에서는 화물 및 여객 수송용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¹¹⁾ 이를 위해 독일 연방정부는 해당 실행계획에서 도심항공교통을 위한 규정 마련, 기술 연구 지원, 인증 개발 등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실행계획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¹²⁾

- ☑ EU의 무인항공 규정 (EU) 2019/947¹³⁾에 맞게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 ☑ 무인항공기 보호를 위해 무인항공기 탐지 시스템을 독일 16개 공항에 구축한다.
- ☑ 에어택시나 화물 운송용 드론 연구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 ☑ 무인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 ☑ 에어택시 인증 개발을 위해 유럽항공안전청(EASA)과 협력한다.

10) 독일 항공기회사 버티컬 <https://verticalmag.com/press-releases/airbus-lays-the-foundations-for-future-ua-m-in-germany/>

11) 2019년에 독일은 스투트가르트에서 유럽 최초의 도심항공교통 시범비행에 성공하였다. Lilium사는 2023년부터 7인승 기체를 개발 중이며, 2025년 플로리다에 버티포트를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12) KOTRA, “현실로 다가오는 유럽과 독일의 도심항공교통(UAM)시대”, 2021.9.13.

13) 2019년 5월 24일 무인항공기 운항에 관한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위원회 규정(EU) 2019/947 https://eur-lex.europa.eu/eli/reg_impl/2019/947/oj/eng

2. 3차원에서의 이륙 - 드론 및 항공택시에 대한 연방정부의 행동계획

- 2020년 5월 13일 항공교통부는 “3차원에서의 이륙 - 드론 및 항공택시에 대한 연방정부의 행동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행동계획의 목표는 드론과 항공택시를 정기적인 교통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이 행동계획은 연구개발과 실용화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행동계획에는 무인항공기에 대한 EU 규정의 이행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다음의 세 가지 핵심 목표는 도심항공교통 구현을 위한 지침으로 사용된다.

- 독일이 시장을 선도하고 수준 높은 안전기준을 확립한다.
- 자동화되고 네트워크화된 비행을 구현한다.
- 개인 정보 및 환경 보호를 추구한다.

3. 연방정부와 도시 간 양해각서(MOU) 체결

- 독일 연방정부는 2021년 6월 28일 EU가 지원하는 도심항공교통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도시인 함부르크, 잉골슈타트, 아헨, 헤센주 북부와 도심항공교통의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¹⁴⁾
- 연방교통-디지털인프라부와 위의 4개 도시는 이번 양해각서에서 도심항공교통을 위한 충전 및 도심 통신 인프라 구축, 통합 공역을 위한 실증과 시범시설 구축, 드론과 에어택시 관련 공동 프로젝트를 통한 아이디어와 기술 공유, 도심항공교통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공동 노력에 합의하였다. 그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도심항공교통 기술, 규제 및 정치 분야의 모범 사례를 서로 교환한다.
- 주요 프로젝트 및 국제개발에 대한 정기적인 세미나 등을 통해 지식을 공유한다.
- 디지털화, 자동화, 네트워킹, 스마트시티 관련 회의 및 워크숍을 공동 개최한다.
- 기술 전문성을 통한 지역 프로젝트에 상호 지원한다.

14) 독일 연방교통-디지털인프라부, “스마트도시 및 지역을 위한 양해각서(Memorandum für smarte Städte und Regionen)”
https://www.bmv.de/SharedDocs/DE/Anlage/DG/mou-drohneninnovationen-dokument.pdf?__blob=publicationFile

독일의 도심항공교통 관련 법령

- 독일 연방헌법인 「기본법(GG)」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연방은 모형항공기와 무인항공기에 관한 규칙에 있어 면허 취득과 권한 등 항공운송 영역에서의 독점적인 입법 권한을 가진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도심항공교통을 규제하는 법적 토대를 만들었다.

1. 2017년 「무인항공기 운항을 규제하는 개정시행령(DrohnenV)」

- 2017년 3월 30일에 제정된 「무인항공기 운항을 규제하는 개정시행령(DrohnenV)」을 통해 개정된 법령은 「항공교통면허시행령(LuftVZO)」, 「항공교통시행령(LuftVO)」, 「항공행정의 수수료 규정(LuftKostV)」이다.¹⁵⁾

개정법령	조문과 내용
「항공교통면허시행령 (LuftVZO)」	제19조(식별표시) 모형항공기 또는 무인항공기시스템에 자신의 이름 또는 주소를 부착해야 한다.
	제108조(행정위반) 규정대로 식별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처벌한다.
「항공교통시행령 (LuftVO)」	제20조(허가가 필요한 공역의 사용) 허가를 필요로 하는 공역 사용에 관하여 무인항공기 자가 구동 비행체(eines Flugkörpers mit Eigenantrieb)등의 항목을 추가한다.
	제21조(항공교통 관제 장치가 있는 비행장 상공 및 통제 공역의 사용) 무인항공기시스템 및 모델을 포함한다.
	제21a조(유럽연합 규정(EU) 2019/947에 따른 “개방형” 시설 범주의 절차 및 유관 당국) 무인항공기와 모형항공기의 운영에는 허가를 필요로 한다. 1. 무인항공기시스템 및 이륙 질량이 5kg 이상인 모형항공기, 2. 무인항공기시스템 및 모델 로켓 추진 항공기, 추진체의 질량이 20g 이상인 경우, 3. 주거 지역에서 1.5km 미만의 거리에서 작동하는 내연 기관이 장착된 무인항공기시스템 및 모형항공기, 4. 비행장 경계에서 1.5km 미만의 거리에 있는 모든 종류의 무인항공기시스템 및 모형항공기; 비행장에서 무인항공기시스템 및 모형항공기의 작동, 유럽연합 규정(EU) No 923/2012의 제2조에서 정의된 야간의 무인항공기시스템 및 모형항공기 등은 항공교통 관제 당국 및 비행 관제소의 승인도 필요로 한다.
「항공행정의 수수료 규정 (LuftKostV)」	부록 도심항공교통 관련 항공청 행정수수료에 대해 인증서 발급비 등을 부과한다.(예를 들어, 인증발급비 25유로)

15) 독일 개정법령 사이트 <https://www.buzer.de/gesetz/12457/index.htm>

2. 2021년 「운항규칙 절차에 관한 개정법(LuftRÄndG)」

- 2021년 6월 14일 제정된 「운항규칙 절차에 관한 개정법(LuftRÄndG)」¹⁶⁾를 통해 「항공교통법(LuftVG)」, 「항공교통시행령(LuftVO)」, 「항공교통허가시행령(LuftVZO)」, 「항공행정의 수수료 규정(LuftKostV)」, 「연방항공청법(LFBAG)」 5개 법령을 개정하였다.

개정법령	조문과 내용
「항공교통법(LuftVG)」	제1조(정의) 제어스테이션을 포함한 항공기는 스포츠나 여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무인항공기시스템'을 포함한다.
	제31조(연방의 업무와 주의 권한) 무인항공기 운항에 대한 감독과 면허발급 등은 주의 권한으로 한다.
	제32조(법령) 도심항공교통을 포함한 항공운송의 개념은 모든 비행 전반에 걸친 행위와 연구에 있어서 넓게 해석되고 있고, 명령 등 일반적인 규정에 모두 적용된다.(예를 들어, 「항공운송시행령」, 「항공운송허가시행령」 등을 말한다.)
	제58조(행정벌) 제2항 무인항공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EU) 2019/947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한다.
	제66a조(무인항공기 운영자등록) 무인항공기 운영자 등록에 관한 내용을 추가한다.
제66b조(승인대상 무인항공기의 등록) 연방항공청(Luftfahrt-Bundesamt)은 승인에 따라 무인항공기 등록을 할 수 있다. 연방항공청은 무인항공기 소유자에게 등록부에 저장된 무인항공기의 등록번호를 전자적으로 전송해야 한다.	
「항공교통시행령(LuftVO)」	제21b조(규정(EU) 2019/947에 따른 운영 범주 "특별" 무인항공기 운행을 위한 관할 당국) 언급된 보호구역, 지리적 목록에 있는 환경과 자연 지역을 고려한다. 향후에는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더욱 구체적인 측정 방법을 기반으로 한 모든 소음 관련 무인항공기에 대한 소음 한도를 설정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적절한 연구를 통해 무인항공기가 어떤 소음과 빛을 방출하는지, 이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시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조사해야 한다.
「항공교통허가시행령(LuftVZO)」	제1조(허가요건 및 범위) 제1항제8호 무인항공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EU)2019/947을 적용하여, 항공기 인증 대상 범주에 최대 이륙 중량이 25kg 이상인 무인항공기를 포함한다.
	제14조(항공기 등록부의 항목) 제1항제1문 무인항공기시스템 및 무인항공기를 포함하여 허가한다.
「항공행정의 수수료 규정(LuftKostV)」	부록 무인항공기 관련 항목을 각각의 부록에 모두 포함시켰다.(예를 들어, 「항공교통시행령(LuftVO)」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증명서 발급 수수료에 무인항공기 항목을 포함한다.)
「연방항공청법(LFBAG)」	제2조 유럽연합의 무인항공기시스템 및 무인항공기시스템의 제3국 운영자에 관한 위원회 위임 규정 (EU)2019/945 제19조의 의미 내에서 동보 기관으로서 연방항공청을 규정한다.

16) 독일 개정법령 홈페이지 <https://www.buzer.de/gesetz/14732/index.htm>

요약 및 결론

- 우리나라는 도심항공교통과 관련하여 소위 항공4법(「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는 「도심항공교통법」을 제정하여,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법은 도심이라는 공간적 범위를 대상으로 비행체를 운항하는 데 있어,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운영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실증사업구역 및 시범운용구역에서의 규제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있다.
- 이와 같이 도심항공교통을 규율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였고, 독일은 기존 법령안에 새로운 기술을 담아내기 위해 개정패키지법령을 만들어 무인항공기와 도심항공교통과 관련된 일반 법령을 일괄개정한 차이가 있다.
- 구체적으로 독일은 2017년 3월 30일에 개정패키지법령인 「무인항공기 운항을 규제하는 개정시행령(DrohnenV)」을 제정하였다. 「항공교통면허시행령(LuftVZO)」에서는 모형항공기와 무인항공기시스템을 일반항공기로 식별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항공교통시행령(LuftVO)」에서는 허가가 필요한 공역, 관제장치가 있는 통제 공역의 사용 대상에 무인항공기를 포함하였다. 「항공행정의 수수료 규정(LuftKostV)」에서는 도심항공교통 관련 항공청 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 그리고 독일은 2021년 6월 14일에 개정패키지법령인 「운항규칙 절차에 관한 개정법(LuftRÄndG)」을 제정하였다. 「항공교통법(LuftVG)」에서 무인항공기를 항공기로 본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일반항공기 규정이 무인항공기와 행정절차에 적용되도록 하였다. 「항공교통시행령(LuftVO)」에서 보호구역 또는 환경과 자연지역을 고려하여 무인항공기 운항에 대해 규제하였으며, 「항공교통허가시행령(LuftVZO)」에서 항공기 인증 대상 범주에 25kg이상인 무인항공기를 포함하였다. 「항공행정의 수수료 규정(LuftKostV)」에서 증명서 수수료 발급에 무인항공기 항목을 포함하도록 하고, 「연방항공청법(LFBAG)」에서 유럽연합의 규정에 따른 통보기관으로 연방항공청을 지정하였다.
- 미래의 새 교통수단으로서 우리나라 도심항공교통에 대한 입법과 정책을 집행 및 개선해 나감에 있어, 정부승인 간소화, 기업친화적 수단 마련,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통한 실험과 기술개발 노력 등을 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추천 자료

- 최경원, 데이터로 보는 도심항공교통(UAM), 국회도서관, 『Data&Law』 2025-5호(통권 30호)
- EASA, Study on the societal acceptance of Urban Air Mobility in Europe, 2021
- Vishnu Kumar Kaliappan, Urban Air Mobility: Intelligent, Safe and Sustainable Systems for Future Transportation, River Publishers, 2024

◆ 입법정보는 법률 제정·개정 주요사항, 타 시도 조례 입법동향,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국외 입법례 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법령 입법예고 사항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법제처: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List.mo?mid=a10104010000>

-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isOgYn=Y>

【문의】 입법정책담당관 ☎ 033-249-5175